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23
----------	--------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의결과 보완사항을 반영, 아동친화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옴부즈퍼슨’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나. 아동의 이익=>아동 ‘최선의’ 이익 문구 수정(안 제5조제2호)
- 다. ‘아동참여기구’ 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라. 아동영향평가 관련 문구 수정(안 제12조)
- 마. ‘아동실태조사’ 실시 조항 신설(안 제13조)
- 바. 위원회 구성 문구 수정(안 제17조제3항제5호)
- 사.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수정(안 제20조)
- 아. ‘옴부즈퍼슨’ 운영 조항 신설(안 제2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7. 27.~ 8. 16.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법무팀 의견]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법무팀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서면심의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아동친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5조제2호 중 “**아동의**”를 “**아동 최선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을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 “**분석·평가**”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3항제5호 중 “**아동**”을 “**아동 대표 및 아동**”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음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음부즈퍼슨을 위

촉·운영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대표
5.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ombudsman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ombudsman을 해촉할 수 있다.

1. ombudsman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ombudsman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ombudsman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ombudsman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u></p>
<p>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u>아동의 이익</u>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p> <p>3.·4. (생략)</p>	<p>제5조(기본원칙 등)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아동 최선의</u> -----</p> <p>3.·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아동 참여보장) (생략)</p> <p><신설></p>	<p>제10조(아동 참여보장)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을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u></p>
<p>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p>	<p>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 ----- -----</p>

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아동 보호자 대표

6. ~ 8. (생 략)

④ (생 략)

제17조·제18조 (생 략)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 정기적으로 분석·평가-----

-----.

제13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7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 대표 및 아동 -----

6.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④ (생략)

제20조 ~ 제22조 (생략)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190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② -----
----- 2회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24조(음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음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음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대표

5.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음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

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ombuds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ombuds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ombuds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ombuds퍼슨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ombuds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ombuds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음부즈퍼슨 수당 등

- 제24조(음부즈퍼슨)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②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수당 등은 소액 지출로 “제12조 ②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 규정에 해당되어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이지현
연 락 처	02-3153-8962